

2018년 등록금심의위원회

간사 위원장



[Signature]

회의록(1차)

일 시	2018. 01. 12.	(금曜일)	14:00	장 소	본관 2층 소회의실
참석위원	김성찬(기획처장), 한상인(학생처장), 한웅(사무처장), 고재열(총학생회장), 김덕환(부총학생회장), 장성원(총학생회학생복지위원장), 장승도(외부위원)		불참위원	최재혁(외부위원)	
안 건	2017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 심의,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심의, 2017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, 2018회계연도 본예산(안) 심의				

토의 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

- (위원) 성원이 되었으므로, 개회를 선언함
- (위원) 교직원대표와 학생대표 관련전문가를 소개하고, 본 위원회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), 「사립학교법」 제29조(회계의 구분), 「학칙」 제85조의 2(등록금심의위원회) 및 「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」,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에 의해 설치·운영됨과 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함.
-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 호선을 진행하면서,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함을 제안하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.
- (위원전체) 동의함.

【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 심의】

■ 토의 및 결의 사항

<토의 사항>

- (위원장) 2017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에 따른 교육부 승인 결과를 설명함.
- (위원)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.
- (위원장)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및 부담여력을 검토한 결과, 사학연금 및 퇴직수당 법인부담금 약 16억 1천만원 중 2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교의 부담이 필요한 상황이며, 법인의 재정 건전성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.
- (위원) 법인의 부담가능 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질의함.
- (위원) 법인의 전년도 이월금과 당기 운영 중 순수입을 합산한 금액임을 설명함. 또한 향후 법인부담의 확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할 것을 설명함.
- (위원장) 교육부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내용을 확인하고 원안과 같이 처리할 것을 동의하는지 질의함.
- (위원전체)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함.
- (위원장)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을 교육부 승인 내용과 같이 처리할 것을 의결함.

<의결 사항>

* 사학연금 및 퇴직수당 법인부담금 중 2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교부담으로 한다.

한상인	한웅	고재열	김덕환	장성원	장승도	최재혁		
<i>[Signature]</i>	<i>한웅</i>	<i>고재열</i>	<i>김덕환</i>	<i>장성원</i>	<i>장승도</i>	<i>최재혁</i>	<i>불참</i>	

토의 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

【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심의】

■ 토의 및 결의 사항

<토의 사항>

- (위원장)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에 대한 회의를 진행함.

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대하여 기획처에서는 전년대비 등록금 중 수업료는 동결하는 (안)을 제안하고 입학금은 정부 정책에 맞춰 향후 4년간 20%씩 인하하는(안)을 설명함.

- (위원장) 수업료 동결(안) 및 입학금 인하(안)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의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2018학년도 등록금책정 안건에 대한 위원들이 동의하는지 질의함.

- (위원전체) 참석의원 전원이 동의함.

- (위원장) 2018학년도 등록금책정(안)은 원안대로 의결함.

<의결 사항>

- ※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은 적정하게 책정되었음을 의결한다.

【2017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】

■ 토의 및 결의 사항

<토의 사항>

- (의장) 2017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, 예산 관련 질의 또는 의견을 위원들에게 요구함.

- (의장) 전체예산은 79,312,575,688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음을 설명함.

- (위원) 전체 수입예산 변동에 대해 질의함.

- (위원장) 법인으로부터 법정부담금 전입금이 1억 증가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임을 설명함

- (위원장)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의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자문결과,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(안) 총액은 79,312,575,688원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에 동의하는지 질의함.

- (위원전체) 참석의원 전원이 동의함.

- (위원장)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(안)은 원안대로 의결함.

<의결 사항>

- ※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(안)은 수입 및 지출 각각 79,312,575,688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의결한다.

토의 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

【2018회계연도 본예산(안) 심의】

■ 토의 및 결의 사항

<토의 사항>

- (위원장) 2018회계연도 본예산(안)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, 예산 관련 질의 또는 의견을 위원들에게 요구함.
- (위원장) 전체예산은 편제정원 감소로 인한 학생수 감소,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 등으로 2017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48억원이 감소하였음을 설명함.
- (위원) 등록금 수입과 전입및기부수입 감소에 대하여 질의함.
- (위원장) 2018회계연도 수입 중 등록금 수입은 61.1%이고 등록금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5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, 전입 및 기부수입은 국가장학금 유형2의 인센티브 감소 및 일반기부금 감소에 따라 추가경정예산대비 약 13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음을 설명함.
- (위원) 행사비 지출에 대해 질의함.
- (위원장) 외부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지출되는 비용으로, 학생의 취업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지출임을 설명함.
- (위원) 등록금 수입에 대해 질의함.
- (위원장) 전년대비 학생수 감소와 입학금 감소에 따라 6억 정도 감소함을 설명함.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휴학생의 복학을 유도하여 등록금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설명함. 또한 대외지원사업의 확충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설명함.
- (위원장) 임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, 임여금은 목적이월사업, 교육환경개선 및 연구학생 경비, 차입금 상환 등 대학운영예산으로 사용됨을 설명하고 의원의 동의를 구함
- (위원전체) 참석의원 전원이 동의함.
- (위원장)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의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자문결과,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 총액은 74,512,566,870원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에 동의하는지 질의함.
- (위원전체) 참석의원 전원이 동의함.
- (위원장)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은 원안대로 의결함.

<의결 사항>

- *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은 수입 및 지출 각각 74,512,566,87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의결한다.